우편번호 : 42620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

○ 공사관리번호 : R26DC00255458
○ 공　　사　　명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결교량(문경교) 재가설공사(총괄)
○ 수 요　기 관 : 경상북도 문경시
○ 개 찰　일 시 : 2026. 10. 30.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재우(☎ 070-4056-7940)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윤균희(☎ 070-4056-7357)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초금액 발표 및 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진명수(☎ 070-4056-7670)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경상북도 문경시 이정원 (☎054-550-6827)



대구지방조달청
Daegu Regional Public Procurement Service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본 공고서 [별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3)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대구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R26BK01764052-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대구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458
1.2. 수요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1.3. 공 사 명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결교량(문경교) 재가설공사(총괄)
1.4. 공사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30-5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2) 공사범위 : 문경교 L=66.0m(B=25.8m), 구문경교 L=59.0m(B=12.0m), 연결도로 L=137.0m(B=25.0m),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6,798,500,000원(**추정가격 : 4,666,909,091원** + 부가가치세 :

466,69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1,664,9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938,5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6,798,500,000**원(100.00%)**	5,133,600,000**원(100.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9.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

야 합니다.

6.2.3. 관련 문의 : 경상북도 문경시 이정원(☎054-550-6827)

6.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8.2.2. 상기 8.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0:00 ~ 2026. 10. 30. 10:00

9.2.2.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5.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2.4.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6.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6.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4. 16.2.와 16.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
>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여야 합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6.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6.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합니다.

16.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6.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충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case1		case2		case3		case4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건축공사업	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 -특례1.75억	6.8억	충족	5억	업체 선택	4억	충족	2억	미달
조경공사업			충족				미달		미달

16.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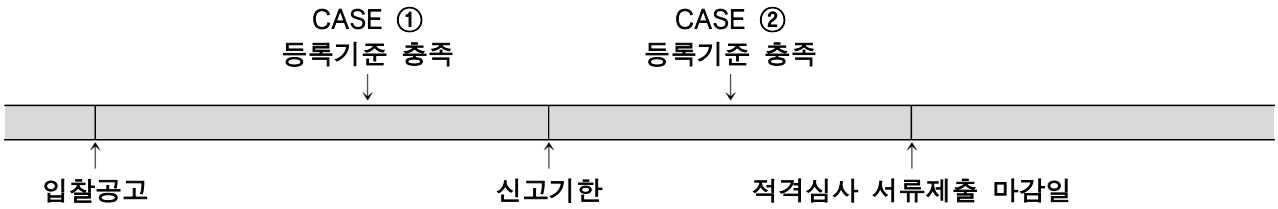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6.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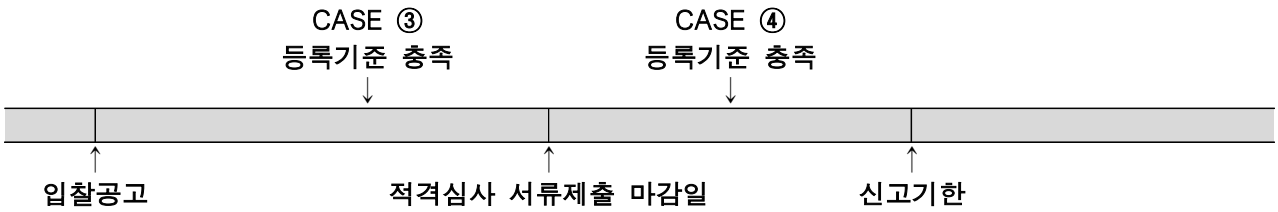
16.5.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6.5.3.1.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6.6. **서류심사 안내**

16.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4]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6.7. **현장조사 안내**

16.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6.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6.7.3. 조사 대상업체는 16.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6.8. **서류보완 안내**

16.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94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6.0
B : 15% 이상 ~ 20% 미만	5.0
C : 10% 이상 ~ 15% 미만	4.0
D : 5% 이상 ~ 10% 미만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붙임4】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공통	• 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능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정보연계센터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공고서 [서식3]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 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택일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 표준재무제표 등*	▷ 주) 3. 참고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장비·시설	•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 대장		정부24
	• 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 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사업장(현장) 가입일 경우, 사업장별로 발급하여 추가 제출]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5】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사무실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5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장비 (해당시)	9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Y ☐ N ☐
기술능력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12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 업체명(사업자번호):

○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조달청은 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대구지방조달청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ㅇ 업 체 명 :

ㅇ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ㅇ 확 인 자 : 건설 (직인)

ㅇ 공 고 일 : 20 . .

기술자 보유현황 \ 연도					20 년			
번호	성명	주민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	월	월	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	○○○		토목 고급			7 입		
3	○○○		토목 초급					
토목 소계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이고 제출일이 '26.7.10.인 경우 '26.1.1.부터 '26.7.10.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기술자 보유인원이 등록기준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제출가능)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대구지방조달청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소속/성명/연락처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도급금액(억원)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00년00월~00년00월)	성명	연락처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실 근무내용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	(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ㅇ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ㅇ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ㅇ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조달청장 귀하

【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

대구지방조달청

현 행	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